

교육과정운영규정

1999.03.01.제정	2000.03.01.일부개정	2001.03.01.일부개정	2002.03.01.일부개정
2003.03.01.일부개정	2004.03.01.일부개정	2006.03.01.일부개정	2010.01.01.일부개정
2011.04.18.일부개정	2012.08.01.일부개정	2013.05.23.일부개정	2013.09.01.일부개정
2013.10.14.일부개정	2014.03.28.일부개정	2015.02.25.일부개정	2017.06.27.일부개정
2018.01.15.일부개정	2018.07.01.일부개정	2018.09.28.일부개정	2020.05.01.일부개정
2021.06.01.일부개정	2022.01.19.일부개정	2023.02.25.일부개정	2023.04.04.일부개정
<u>2023.06.01.일부개정</u>			

<학사관리팀>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 학칙 제32조에 의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용어의 정의) 대학 교육과정의 편성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06.01.)

1. ‘교육과정’이란 입학년을 기준으로 교양과 전공능력의 함양을 위해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체계를 의미한다.
2. ‘교육과정 편성’이란 학과(부) 단위의 교육과정을 개발, 개편,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교육과정 개발’이란 전공의 신설, 개편 등으로 교육과정을 신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교육과정 개편’이란 산업 및 사회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 검토하여 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5. ‘교육과정 변경’이란 전체 이수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교과목의 과목명, 학점, 개설학기, 시수 등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 그리고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조의3에서 이동 <2023.06.01.>]

제2조 삭제<2023.06.01.>

제2조의2(교육과정 편성원칙) 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편성한다.

1. 교육목표와 인재상
2. 동명인 학생역량 및 전공역량
3.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4. 국가정책 및 사회적 요구
5. 교육과정 운영평가 결과
6. 수요 조사 및 만족도조사 결과 등

② 교육과정 개편 주기는 4년으로 하되 대학운영 정책상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으며, 개편할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편 주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본조 신설 2023.06.01.]

[중전 제2조의2는 제2조의4로 이동 <2023.06.01.>]

제2조의3(교육과정 구분) ① 교육과정은 교과 교육과정과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교과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교양과정의 이수구분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하고, 기초교양, 역량교양, 심화교양 구분한다.

③ 전공과정의 이수구분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하고, 전공위계에 따라 전공기초, 전공일반, 전공심화로 구분한다. (개정 2010.1.1., 2013.5.23., 2013. 10.14., 2014.3.28., 2015.2.25., 2017.6.27., 2020.5.1., 2023.02.25.)

④ 교직과정은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과교육, 교육실습 영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1.)

⑤ 교양, 전공, 교직과정 외에 학생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실용 교과목 등을 기타 강좌로 편성하여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20.5.1., 개정 2023.02.25.)

⑥ 교과이수영역 중 자유선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3.04.04.)

1. 다른 학과(학부, 전공)의 과목
2. 교사자격증 취득과 관련되지 않은 교직 과목
3. 기타 강좌에서 개설하는 과목
4. 학점인정으로 취득한 일부 과목
5. 기타 학사관련 규정에서 자유선택으로 인정하는 과목

[본조 신설 2023.06.01.]

[중전 제2조의3은 제1조의2로 이동 <2023.06.01.>]

제2조의 4(교과목 개설) ①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이수표의 전체 학점, 필수학점, 선택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을 반영하여 개설하며, 학과(학부) 운영의 특성상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교과목별 시수는 이론, 실습, 설계로 구분하며 1학점당 1시수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실습 수업은 운영에 필요한 1학점 당 2시수로 할수 있다. (개정 2023.04.04.)

③ 계약학과 및 후진학학과의 교육과정과 교과목 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④ 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교과목 개설 및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23.02.25.)

[본조신설 2020.5.1.]

[중전 제2조의2에서 이동 <2023.06.01.>]

제3조(교육과정 이수 원칙) ① 각 영역별 이수학점 구성과 이수기준 및 졸업에 필요한 최소이수 학점은 교육과정 이수표에 따른다.

② 교과목의 이수는 입학 당해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영역별 이수 학점은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교과목은 중복이수 할 수 없다. 단, 교과목 성적에 따라 재수강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7.6.27.)

- ④ 삭제 <2006.3.1.>
- ⑤ 삭제 <2006.3.1.>
- ⑥ 교육과정을 소급 적용하여 개편한 경우 구 이수과목은 구 교육과정의 영역으로, 신규로 이수하는 과목은 개편 교육과정의 영역으로 인정한다.
- ⑦ 삭제 <2013.5.23.>
- ⑧ 교육과정의 소급개편으로 기존 학생에게 불리한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⑨ 삭제 <2015.2.25.>
- ⑩ 동일 단과대학 내 타 학과(학부) 전공과목 이수 시 학기당 최대 6학점, 재학 중 최대 24학점의 범위 내에서 소속 학과(학부)의 전공선택으로 인정하는 전공상호인정제를 운영하며, 단과대학별 인정범위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15.2.25., 개정 2017.6.27., 2020.5.1.)
- ⑪ 삭제 (신설 2017.6.27., 개정 2020.5.1., 2023.02.25.)
- ⑫ 삭제(신설 2022.1.19., 개정 2023.02.25.)

제4조(복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① 복학(재입학 포함) 전을 구 교육과정, 복학 후를 신 교육과정으로 정의한다.

- ② (삭제)
- ③ 졸업학점은 입학년도의 교육과정(구 교육과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삭제)

제4조의2(소속변경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① 소속변경한 학생은 소속변경한 학과(학부)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한다. (개정 2020.5.1., 2021.9.1.)

- ② 소속변경한 학생은 소속변경 학과(학부)의 이수영역과 동일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영역별 이수학점은 교육과정이수표에 의한다. (개정 2020.5.1., 2021.9.1.)
- ③ 삭제 <2004.3.1.>
- ④ 소속변경 전 이수한 과목이 소속변경한 학과(학부)의 과목과 동일한 경우 소속변경한 학과(학부)의 과목 이수로 인정한다. (개정 2020.5.1., 2021.9.1.)
- ⑤ 삭제 <2006.3.1.>

[본조 제목 개정 2021.9.1.]

제5조(교육과정 이수표의 효력)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각종 이수표 및 제반사항들은 교과목 이수에 관하여 본 규정의 부속규정으로서 효력이 있다.

제6조(교육과정 개편절차 및 운영) ① 교육과정 개편은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하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편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다. (개정 2006.3.1., 2018.1.15., 2018.9.28., 2020.5.1., 2023.02.25.)

1. 대학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대학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기본정책, 대학교육의 질 관리 사항과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개편 방향 설정
2.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 지침 수립

3.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분석 및 설계
4.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안) 확정
5. 교육과정 운영
6.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대상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수요도 및 만족도조사
 - ② 총장은 시설과 인적자원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원만한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선택과목의 개설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학기 이수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개설하여야 한다.
 - ③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수요자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와 국가 정책,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7.)
 - ④ 교육과정 개편에 필요한 분석 및 결과, 환류방법 등에 대한 세부절차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5.1., 개정 2021.6.1.)
 - ⑤ 교육과정 개편 주기는 4년으로 하되 대학운영 정책상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으며, 개편할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편 주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0.5.1.)
 - ⑥ 교육과정별 운영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5.1., 개정 2021.6.1., 2023.02.25.)
 1. 전공과정 : 각 학과(학부)
 2. 교양과정 : 학부교양대학
 3. 교직과정, 기타 강좌 : 교무처
 - ⑦ 개편 주기별 교육과정 개선 우수 학과(학부)에 대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5.1.)

[조 제목 변경 2020.5.1.]

제6조의 2(교육과정운영위원회) ① 전공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과대학 교육과정운영위원회 및 학과(학부)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5.1., 2021.4.1., 2023.02.25.)

1. 단과대학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으로 하고, 학과(학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과장(학부장)으로 한다.
2. 단과대학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단과대학 내 학과(학부)별 전임교원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학과(학부)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과(학부)소속의 전임교원 및 산업체 위원, 재학생 대표, 졸업생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4. 단과대학 교육과정운영위원회 및 학과(학부) 교육과정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학과(학부)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교육 수요도 및 만족도조사 결과와 교육과정개편 지침 등을 반영하여 각 학과(학부)별 전공교육과정의 개편(안)을 마련한다.
6. 단과대학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학과(학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마련한 각 학과(학부)의 전공 과정개편(안)을 검토하고 교육과정위원회에 제출한다.
7. 단과대학 교육과정운영위원회 및 학과(학부)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기타 전공 교육

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단과대학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단과대학의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둘 수 있다.

② 교양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학부교양대학에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5.1., 2021.4.1., 2023.02.25.)

1.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부교양대학장으로 한다.
2.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학부교양대학 소속 전임교원 1인 이상, 학부교양대학 외 단과대학 전임교원 1인 이상, 산업체 위원, 재학생대표, 졸업생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3.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교양 영역(역량)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4.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교육 수요도 및 만족도조사 결과와 교육과정개편 지침 등을 반영한 교양교육과정 개편(안)을 교육과정위원회에 제출한다.
5.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부교양대학운영규정 및 지침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9.28.]

제7조(대체이수지정 위임 및 보고) ① 교육과정표에 설정된 교과목이 폐지되거나 개설되지 아니하여 수강할 수 없는 경우와 교과이수체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대학 학(부)장은 대체이수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8.)

② 전항의 지정을 한 때에는 학(부)장은 교무처장에게 그 사유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2011.4.18., 2012.8.1., 2018.7.1., 2021.6.1.)

제8조(연계 및 융합전공의 교육과정) ① 연계전공 또는 융합전공을 개설하고자 하는 복수의 학과(학부)는 제2조 및 제2조의2의 편성기준에 따라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② 연계 및 융합전공 교육과정은 연계·융합전공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거쳐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개설한다. (개정 2023.02.25.)

③ 대학 운영상 필요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계전공 또는 융합전공을 개설할 수 있다.

[조 신설 2020.5.1.]

제9조(외국대학과의 연계 및 공동 교육과정) ① 외국대학과의 연계전공 또는 공동 교육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학과(학부)는 외국대학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편성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23.02.25.)

② 외국대학과의 연계 및 공동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하며, 시간표 편성 및 수업교수 배정 등의 운영은 개설 주관학과(학부)에서 담당한다.(개정 2023.02.25.)

[조 신설 2020.5.1.]

제10조(특별과정 개설) ① 학습자 경험의 다양화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특별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23.02.25.)

1. 한국어교원 자격증 과정
2. 교양 및 전공특화교육과정(마이크로디그리)
3. 기타 특별과정

② 특별과정은 대학교육 운영상 필요시 또는 수요자의 요구 등에 의하여 개설한다.

[조 신설 2020.5.1.]

제11조(기타사항 운영)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23.02.25.)

[조 신설 2020.5.1.]

부 칙

본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2000년 3월 1일 현재 재적중인 학생 전원에게 적용한다.

② 96, 97학번의 정보공학부와 정보경영사회학부의 졸업학점은 교육과정 소급적용에도 불구하고 130학점으로 한다.

③ 2000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구,교육과정에 의한 교과목 이수능 신교육과정상의 영역별 학점 이수능 보며, 신교육과정상의 영역별 적용이 구,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불리할 경우는 구교육과정상의 이수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복학생의 신교육과정 적용도 재학생과 동일하다.

1. 기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영역별 대체인정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수인정된 영역의 영역별 이수학점을 초과한 교과목의 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표> 영역별 대체인정표

구교육과정 이수영역		신교육과정 이수영역	
교양필수	영어	교양	영어
	컴퓨터		컴퓨터
계열교양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술		일반교양
	외국어		제2외국어
전공기초(학부기초)		전공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
		자유선택	

2. 전공기초 학점이수는 96-97학번의 경우 20학점을, 98-99학번 정보경영사회학부, 정보조형학부 및 건축학부 학생은 20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3. 구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의 영역이 변동된 경우 구교육과정상의 영역을 해당과목의 영역으로 본다.

4. 교육내용은 유사하나 교과목의 명칭이 변경된 과목은 서로 다른 과목으로 보아 별도의 과

목코드를 부여하며, 중복이수 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교과목개설은 구 교육과정에 의하지 않고 2001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라 전 학년에 개설한다.

② 구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의 영역이 변동된 경우 구교육과정상의 영역을 해당과목의 영역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본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 재적중인 학생전원에게 적용한다.

②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96 ~ 2001학번)의 교양과목 영역별 이수는 영어 6학점, 컴퓨터 5학점, 제2외국어 4학점, 일반교양 8학점 이상으로 하며, 총29학점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신교육과정 중 전공 기본이수과목에 관한 사항은 소급하지 않고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 제3항 및 제4조의2 제2항 등의 전공영역학점 사항은 2002학번 이전의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규정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규정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2012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교양 영역 내 세부영역별 이수조건은 폐지하고, 2011학번 이전 학생의 해당 학과별 일반교양 이수학점만 충족하면 된다.
2. 2011학번 이전 학생이 2012학년도 신규 영역(리더십, 학과필수, 기초수학) 이수 시 일반교양으로 인정한다.
3. 2011학번 이전 학생의 구교육과정의 전공이수 영역 내 세부영역별 이수과목은 '전공' 영역으로 인정하고, 해당학과별 전공 이수학점만 충족하면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의 편성 및 구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교과 편성 및 구분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